도민중심 행정하는 의회

2025 예산.정책 이슈

통권 25-12호

Budget·Policy Issue

2025년 재정 제도 모음집

I. 예산 수립 단계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 성인지예산제도
3 특별교부세 제도

II. 재정 운영.집행 단계

1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2 민간위탁 제도
3 공공기관 위탁 · 대행 개정

III. 회계.결산 단계

1 순세계잉여금
2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력 평가 지표)

IV. 재정 공시.평가 단계

1 재정공시 제도
2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3 행사축제 원가회계 공개제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 산 정 책 담 당 관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통권 25-12호

2025 예산.정책 이슈

Budget·Policy Issue

I. 예산 수립 단계

00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009 성인지예산제도
015 특별교부세 제도

II. 재정 운영·집행 단계

021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033 민간위탁 제도
041 공공기관 위탁 · 대행 개정

III. 회계·결산 단계

050 순세계 잉여금
056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력 평가 지표)

IV. 재정 공시·평가 단계

062 재정공시 제도
071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076 행사축제 원가회계 공개제도

I. 예산수립 단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 개념 및 역할

○ **개 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정운용의 균형을 위해 수립하는 기준임

□ **「지방재벙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역 할**

– 본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훈령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됨

– 따라서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함

2.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중요성

□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중요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 ·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정 · 재정 운영의 표준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 행정적 · 재정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구 분	중요성
법적 제도적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규범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법령 · 조례 · 중앙정부 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 • 편성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절차가 누락된 경우 예산 부결 · 삭감 사유가 될 수 있음
재정 건전성 확보	• 세입 · 세출의 합리적 추계를 통해 과다 편성 · 과소 편성을 방지 • 지방채 발행, 기금 설치 · 운용, 투자심사 등 재정 부담 사업의 사전 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편성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 • 불필요한 신규사업 억제, 우선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도
정책 · 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역발전계획, 부문별 중기계획과 연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와 재원 배분이 일치하도록 함 • 행정의 연속성 및 예산의 전략적 배분 가능
예산집행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 세출 항목별 편성 기준, 단가 적용, 산출근거 작성 방식 등을 명시해 • 자의적 · 임의적 예산 책정 방지 • 의회 및 감사기관에서 검증 · 감사 시 준거자료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 중심 재정운영 촉진
부서간 기관간 일관성 확보	• 각 부서가 독자적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편차 · 형평성 문제 해소 • 광역–기초, 본청–직속기관–사업소 간 편성 체계 일관성 유지 • 동일 사업 · 유사 사업의 중복투자 및 재정 낭비 방지
행정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	• 매년 반복되는 편성 절차와 일정, 제출 서식, 검토 기준을 표준화하여 업무 효율 제고 • 부서 담당자가 사전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파악 가능 → 예산 편성 일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사업 등 대외 협력사업의 재정계획 수립 용이

3. 2026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 **최근 3년간 개정 사항은 '24년(32건), '25년(25건), '26년(23건)**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정 사항**

1 준경비 협의 규정 등 신설

-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 지자체 신설 · 폐지 · 통합 · 분리 등 필요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기준경비 설정

2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 전담조직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 대한 단서 규정 명료화
- 납세자보호관 지급여부 명확화, 특사경활동비 과장까지 확대

3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총액한도 변경 명시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준수 및 사후조치 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5% 증액하거나 동결하도록 하는 규정 명시

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5 행사 차출 지급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실비성격으로 구체화하고, 본연의 업무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화 등 규정 보완

6 세입과목 중 보조금 반환수입의 '전년도' 용어 명확화

- 보조금 반환수입의 '전년도'를 직전년도와 그 이전연도를 모두 포함하는 '지난연도'로 변경하여 용어 명확화

7 법정잉여금 편성기준 세분화

- 순세계잉여금 중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특교세 등 사용목적이 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재원관리를 위해 법정잉여금 통계목 세분화

8 사무관리비 내 일반 · 관리용역비 개념 보완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사무관리비 내 일반용역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명시
- 관리용역비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비 예시 추가

9 행사실비지원금 설정 명확화

- 장시간 진행되는 대규모 재난 훈련 등 '훈련'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내용과 통일을 위해 해당 문구와 동일하게 보완 및 실비 명시

10 법정 절차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관련 시설비 설명 보완

- 조정, 소송 등 법정 절차 · 결과에 따른 보상금(도로 · 하천용지 보상 등) 증액분을 시설비 목 설정에 명시

11 공사 · 공단 융자금 등 목 설정 명료화

- 공사 · 공단, 출자 · 출연기관 및 시 · 군 · 구에 대한 융자 재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목 설정 명료화

12 예비비 변경 제한 명시

- 예비비(801) 편성목 내 통계목 상호 간에 융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명시

13 이월 ·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철저 명시

- 최근 지자체 이 · 불용률 증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 · 불용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 규정 명시 및 집행률 하위 통계목 안내

1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예산편성 제한 명시

- 「근로기준법」개정('25년)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따른 보조 ·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 수준 강화 내용 명시

15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규정 명시

- 회계 · 기금 상 여유재원은 원칙적으로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하여 각 회계 ·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명시

16 재난안전예산 입력항목 변경사항 명시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 및 국가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예산' 속성 입력항목 변경사항 명시

17 예산의 이월 집행 명시

- 이월액 확정후 집행된 예산은 이월액 정정이 아닌 이월예산의 집행으로 보고 출납폐쇄기한 처리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

18 예산안 첨부서류 양식 설정

-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위한 첨부서류 공통양식 마련 및 표준화 · 시스템화 추진(별첨)

19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기타 용어 정리 등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064 '문화재'→'국가유산'으로 변경,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5. 예비비 '긴급재해대책'→'긴급재난대책'으로 변경 등 현행화
- 공기업과목 신설 · 변경에 따른 내부거래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수정

20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개선

-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중 '성별 수혜분석' 사업수혜자의 통계출처를 추가하도록 개선

21 기금의 폐지절차 명확화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된 경우 기금의 관리에 대한 폐지절차 명확화 및 기금이 폐지된 경우 자산 등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 명시

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별 분리 운영 명시

-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계정별 분리하여 편성 · 운영하는 내용 명시

23 기금운용계획 상 전출금 신설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전출금'을 지출계획에 기존 '기타지출'에서 '전출금'으로 분리하여 명시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과제

□ 예산편성운영기준 과제

○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재정의 통일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몇 가지 구조적 · 제도적 우려점이 발생할 수 있음

1. 행정적 경직성

- 획일적 규정 적용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반영이 제한될 수 있음

→ 예: 농촌 · 도서지역과 대도시 간 재정 수요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움

기준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예산 편성이 증가

→ 실질적 정책 목표보다는 '기준 충족'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

2. 재정 운영의 유연성 부족

- 긴급 현안 · 재난 대응 등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제약
- 기금운용, 계속비, 명시이월 등 장기 · 다년도 사업 조정이 어려워

→ 사업 지연, 불필요한 이월 · 불용 증가

3. 창의적 · 혁신적 사업 추진 제약

- 세출 항목별 · 단가별 편성 제한이 창의적 사업 구성에 장애
- 신규사업은 엄격한 사전절차(투자심사, 중앙 협의 등)로 진입 장벽 높음
- 성과지표 설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성과관리 실효성 저하

4. 의회 심의 · 집행부 갈등 요인

- 기준 해석 차이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예산안 조정 갈등 발생
- 특히 지방보조금,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등 민감 항목에서 논란 빈번

5. 실무부서 업무부담 가중

- 매년 변경되는 세부 지침 · 산출근거 반영으로 편성 준비기간 부족
- 첨부서류 · 산출근거 작성이 방대해지고, 실질적 기획보다 문서작업 중심으로 변질
- 작은 지자체일수록 예산부서 · 담당자의 전문성 · 인력이 부족하여 과부하 심화

6. 재정 건전성 지표와의 괴리

- 기준상 재정 건전성 확보 규정이 있더라도
- 국고보조사업, 의무지출(법정경비) 등 재량권이 거의 없는 지출이 대다수

→ 실질적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적 건전성 확보가 어려움

Ⅰ. 예산수립 단계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예산제도 개념 및 법적근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 성인지예산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성인지결산서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또한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추진 경과 및 추진 체계

□ 추진 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 · 공포 ('11. 3. 8.)

–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조항 마련

※ 국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첫 작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공포 ('11. 9. 6.)

○ 2012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및 제출 ('12. 4.~5.)

○ 201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시달 (매년 7월)

○ 201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 (매년 11월)

□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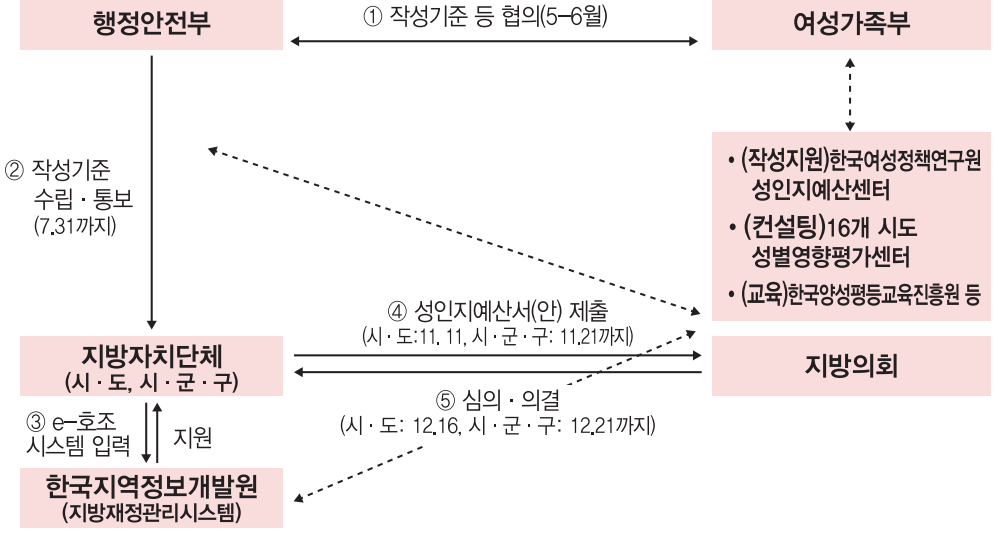

□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통보(행정안전부)

○ 국가정책의 방향,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여성가족부 협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함께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7.31까지)

□ 성인지예산서 작성(시·도, 시·군·구)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작성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

※ 성평등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수요, 자치단체장의 성평등 관련 공약사항,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수립

※ 성평등 목표의 수립은 예산부서와 여성정책담당부서 등이 주관하고 필요할 경우 16개 시 · 도 성별영향평가센터 활용

※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지자체의 성평등 지수 등 성평등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수립

– 수립한 자체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과)예산안에 반영

※ 가능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를 예산서의 성과지표와 연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동시에 심사 · 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 제출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방재정법」 개정 · 공포 ('11. 3. 8.)

–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근거조항 마련

※ 국가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3~'2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및 주력사업 ◇기타 사업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6 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 결정한 사업

□ 대상사업 선정절차

○ 자체 수립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사업부서 및 각 지역별 성별영향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

○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고, 종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4. 성인지예산제도 Q&A

01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인가요?

•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50 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은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재정지출을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의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가의 재원이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나요?

• 성인지예산이 정부 예산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산의 배분구조가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배분구조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국가재정이 성평등을 포함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3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성별격차를 감소시키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욕구에 대응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예산에 대한 보다 투명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04 다른 나라에서도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나요?

- 성인지예산 활동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 중 하나로 2014년 현재 90여개 국가가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제도로서 성인지예산이 시행되는 국가는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부차원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나라는 한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11개국입니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 및 지자체에서 성인지보고서를 작성하며, 성평등 사업의 성과를 간략히 서술하는 수준입니다.

출처: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2024.5.)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특별교부세 제도

※출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 운영 지침(2025.9.)

1. 특별교부세 개요

□ 제도 의의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2조 및 별표8

□ 재원구성 및 유형

○ 특별교부세 재원 : 정률교부세(내국세의 19.24%)의 3%

○ 특별교부세 유형

계	지역현안수요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수요
100% (정률교부세의 3%)	40%	10%	50%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소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소관

□ 교부대상

○ **지역현안수요**(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재난안전수요**(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특별교부세 운영 원칙

Ⅰ 사업의 적정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등 재원배분 검토 시 예상하지 못한 **시급하거나 예외적인 수요**에 투자하는 사업 우선 지원

○ 투자 규모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 **수혜 범위가 넓거나** 투자 **효과가 조기에 발생**하는 사업 우선 지원

○ 효과적인 성과 창출, 재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 분산투자 사업 제한**

※ 필요시 사업당 최소 교부액이나 자치단체별 신청사업 수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특교세 지원 목적, 취지 및 법령상 제한**되는 사업만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신청**

- 특교세 목적상 제한 :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에 지원하는 사업 제한, △지자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부지나 건축물(시설)에 지원 제한
- 특교세 취지상 제한 : △인건비 · 운영비 · 행사성 경비 지원 제한, △부지(시설)매입비(보상비) 등 본사업 착공 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한
- 법령상 제한 : △민간보조사업 제한, △토목 · 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

2 재정 건전성 및 합법성 제고 유도

○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우수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

○ **위법 · 부당**한 행위 등으로 **점검** 또는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외 · 차등 가능

○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사업은 지원 제한 가능

3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

○ 전년도 **집행내역을 다음연도 3월**까지 **국회**(상임위)에 **보고**(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 및 제15조)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지방재정 365 활용)

○ 특별교부세 운영에 **교부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교부세위원회(민간위원 참여) 운영**을 통해 제도 운영방향과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선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성과관리 강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2 · 3호)

4 집행관리 철저

○ 교부조건이나 용도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기록** 관리

3. 집행 관리 기준

□ 예산반영 및 집행

○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 가능**(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재정법 제45조)

– **인센티브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세입재원**으로 **활용**(**특정용도 지정 및 예산 성립 전 사용 불가**)

○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국가 차원의 긴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적 경비**는 사용 **가능**

○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

– 부득이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용도변경 또는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시 · 도가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시 · 군 · 구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예산편성 · 집행 · 관리하여야 함

□ 집행실적 점검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사업에 대하여 **재원관리책임자(예산부서장)** 및 **사업관리책임자(사업주관 부서장)**를 지정하여 관리

– 재원관리책임자는 교부 통지를 받는 동시에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에 기록 관리(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관리책임자는 '추진사업 관리카드'를 기록 관리(별지 제4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및 기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인 **집행점검** 실시(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가능)

* 현안수요는 교부세과, 재난안전수요는 재난관리정책과,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는 사업부서에서 지도 · 점검 및 사후관리(용도변경 포함) 실시

□ 집행잔액 사용

○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은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공시설 설치, 재난안전관리사업 등에 재투자

– 재원관리책임자는 집행잔액을 확인하여 재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투자현황을 기록관리(별지 제6호 서식)

– **재난안전수요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사업**에 재투자

–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전액 투자재원으로 활용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사용

※ 다만, 재난안전수요 응급복구사업 집행잔액을 동일 재난의 항구복구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

○ 시 · 도가 시 · 군 · 구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 · 도는 시 · 군 · 구로부터 집행잔액을 반납받아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

4. 특별교부세 운영 우려점

1. 배분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영향

○ 특별교부세는 일반 교부세와 달리 객관적인 산정 공식이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으로 교부됨

○ 이로 인해 국회의원 청원,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형평성 문제

○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라도 지역 ·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

○ 소규모 자치단체일수록 중앙부처와 정치권 인맥 부족으로 교부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받는 사례가 보고됨

3. 용도 불명확 및 남용 가능성

○ 원래 취지는 재난 · 긴급현안 대응, 국가정책 지원이나, 실제로는 도로포장 · 체육관 건립 등 일반적인 생활 SOC 사업에도 쓰이는 경우 많음

○ 이로 인해 기본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처리하여 중복지원 ·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

4. 집행 관리 미흡

○ 특별교부세 교부 후 사후관리 · 성과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목적 외 사용이나 사업 효과 저하 우려

○ 일부 자치단체는 교부액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함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1. 금고의 개념 및 금고지정 방법

□ 금고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정한 제2금융권도 포함 함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 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자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2019.5.9.)

○ 금고 지정 · 운영 근거

구 분	금고 지정 근거	세부 선정기준	협력사업비 기준
지자체 (243개)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교육지자체 (17개)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기준」 (교육부 예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	–	–

자료: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2024. 4)

2. 은행 금고지정 이점 및 협력사업비 개념

□ [은행] 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이점

○ 금융기관들이 출혈경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지자체 금고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

– 지자체의 금고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은행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

– 우량 고객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계영업을 할 수 있음

– 지역의 예산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지정되면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이점
■ 수천억~수십조 원 규모 세입 · 세출관리, 예치금 운용수익
■ 예대율(예금대비 대출금) 관리 비용 절감
■ 지자체 각종 사업에 우선적 참여
■ 산하기관, 공무원 및 가족 대상 부가영업
■ 지자체 금고지기 타이틀로 타기관 영업에 활용

자료: 금융경제연구소(2019). 「금융기관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실태 및 개선방안」

□ 협력사업비 개념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기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지자체 등에 제공되는 현금** 등은 금고지정에 따른 반대 급부적 수입이므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투명 ·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

– 협력사업비는 3가지로 구분함. 첫째, 현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금고 은행에서 민간 법인 · 단체 등에 직접 지급하는 '직접 집행 협력사업비'. 셋째, 금고은행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물품 등 협력사업비'로 구성됨(감사원. 2015: 236)

□ 협력사업비 처리

○ 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금고지정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금고 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함

– 금고 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음

–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수입의 직접 사용이 금지됨(지방재정법 제15조).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사후 통보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 금고 협력사업비 공개 조례 운영 실태

○ 금고의 지정근거와 운영은 지정 조례운영 또는 규칙 운영하는 자치단체로 구분함

– 협력사업비 내역 관련하여 서울과 울산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구분	조례명	금고 약정	협력사업 비공개	협력사업비 공개
서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
부산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	제13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대구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12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인천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17조(협력사업비)
광주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	제15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대전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10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
울산	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
경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충북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충남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10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전남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3년	○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
경북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년	○	제16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경남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년	○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교육청〉

구분	조례명	금고 약정	협력사업 비공개	협력사업비 공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	제6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	제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1조(협력사업비 공개)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2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4조(협력사업비 출연 및공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	–
경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5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1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1조의2(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2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4년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등)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년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4년	○	제14조(그 밖의 사항)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 · 수 ·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다 경쟁에 따른 협력사업비 과다 납부 또는 각종 특혜 관행화

– 지자체 외에는 협력사업비 납부 및 집행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운영과정상 투명성 확보 한계

– 지자체, 국립대학과 달리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은 세부 선정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임의로 특정 은행과 계약

□ 이에 따라 금고 지정 · 운영과정상 공정성 확보를 통해 부패 유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금고 선정기준 마련

– 지방공기업 등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자체 근거(내규 등)를 마련하도록 지도 · 관리

○ 협력사업비 경쟁 제한방안 강구

– 협력사업비가 금융기관 비용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배점기준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협력사업비 공개 확대

–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협력사업비 총액 등 공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 및 국 · 공립대학에 대한 제재 등 지도 · 감독 실시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4.4.8.),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4. [논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을 관리 · 확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의 문제점

첫째, 현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항목은 전체 배점에서 11점에 지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예규인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기타사항" 항목의 세부항목인 '자치단체 자율항목'은 지역의 특수성 등 고려 평가기준이 100점 중에 11점 해당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재정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음

– 세부항목 중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등은 이미 모바일 금융환경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평가항목으로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남아 있음

셋째,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금융기관 신용도나 예금금리 등은 실제 은행간 큰 차이가 없음

○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일률적인 금고 지정 기준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재정 상황과 현저히 괴리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배점 기준을 높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편

–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결합으로 모바일금융 환경이 자리잡게 됨.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마련

자료: 서울시의회 예산과 정책, 최현재(202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 개선방안」

5. 충청남도 금고 운영 현황

○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금고 운영현황

- 충남도 금고는 매회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맡고 있으며, 제2금고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번갈아 맡고 있음. 협력사업비 규모는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보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는 제2금고에서 더 높은 출연을 하고 있음
- 충남도교육청 금고는 매회 농협은행에서 맡고 있음

○ 충남도청

(단위: 백만원)

약정기간	구 분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총액	연간
2016. 1. 1. ~ 2019. 12. 31. (4년)	**계**		**9,810**	2,453
	제1금고	NH농협은행	4,800	1,200
	제2금고	하나은행	5,010	1,253
2020. 1. 1. ~ 2023. 12. 31. (4년)	**계**		**15,200**	3,800
	제1금고	NH농협은행	6,000	1,500
	제2금고	KB국민은행	9,200	2,300
2024. 1. 1. ~ 2027. 12. 31. (4년)	**계**		**16,300**	4,075
	제1금고	NH농협은행	6,200	1,550
	제2금고	하나은행	10,100	2,525

○ 충남도교육청

(단위: 백만원)

약정기간	구 분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총액	연간
2018.1~2021.12	**금고**	NH농협은행	**820**	205
2022.1~2025.12	금고	NH농협은행	950	237.5

1)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증거기반 요인 분석과 정책제언의 내용 중 정책제언을 정리함

○ **충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법적 구속력이 약함**

–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법규로서,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반면, 규칙은 행정내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자치규범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조례로 추진될 경우, 단체장의 변경과 관계없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하지만 규칙은 단체장이 쉽게 제 · 개정 가능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

구 분	금고의 지정 및 운영 근거	
	규칙 운영	조례 운영
지방자치단체	충남,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전남, 경남

– 충남도 금고 운영에 대한 근거로서 법적 타당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규칙 및 조례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함

○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충남도 세외수입 증가로 직원의 복지 및 지역사회 투자 재원 확대가 가능함**

– 금고운영 이후의 사후평가나 성과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금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금융의 역할이 요구됨

참고 시·도별 협력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약정기간	금고현황 및 협력사업비			
		제1금고		제2금고	
서울	2023~2026	신한	251,100	신한	15,300
부산	2025~2028	부산	42,400	국민	21,000
대구	2024~2027	대구	22,000	농협	1,800
인천	2023~2026	신한	110,700	농협	12,800
광주	2025~2028	광주	12,000	농협	2,700
대전	2022~2025	농협	11,600	하나	3,200
울산	2024~2027	경남	13,000	농협	2,800
세종	2023~2026	농협	5,200	하나	6,210
경기	2025.4~2029.3	농협	153,900	국민	46,100
강원	2022~2025	농협	6,100	신한	2,200
충북	2022~2025	농협	6,400	신한	1,600
충남	2024~2027	농협	6,200	하나	10,100
전북	2022~2025	농협	7,500	전북	3,300
전남	2024~2027	농협	8,100	광주	3,000
경북	2023~2026	농협	8,500	대구	3,400
경남	2023~2025	농협	7,000	경남	3,000
제주	2025~2028	농협	10,400	제주	1,600

민간위탁 제도

1. 민간위탁 개념

□ 민간위탁 개념

○ 각종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민간위탁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본문 '조례')」 제2조제1호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사 개념과의 비교

○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용 역
–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용역은 주로 단순 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 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용역방식이 적정
–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대 행
–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을 행정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 기관이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 기관이 대행 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 대행은 권한대행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에 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2]와 개별법령에서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민간대행은 민간위탁[3]과는 개념상의 책임 소재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 · 운영 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위탁과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2)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 공공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공공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 (제2항)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제3항)을 구분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민간 위탁이,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매우 커서 경쟁 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위탁이 적절
- 다만, 양자는 권한 부여 및 책임소재가 동일하고 현실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관리 운영체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구분 실익은 크지 않음

기타 유사개념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같 은 점	다 른 점	
	위 임	민간위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 · 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하부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 간 발생)	법인 · 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 간 발생)

○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부(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2024년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

2.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사무기준(조례 §4)

○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아동 · 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 · 예술 · 영상 ·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 · 녹지 · 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 ·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 예) 물재생시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운영 ·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등

– 예)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 예)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검사 · 조사 기능

– 예) 교량안전점검, 공사관리 등

□ 민간위탁 제한영역

○ 주민의 권리 · 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 · 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 위탁 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

예) 조례상 편익시설 등의 위탁은 사용수익허가 사항으로 민간위탁과 구분 운영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

❶ 시설형 위탁 : 충청남도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예) 청소년수련관, 각종 복지시설, 병원, 자원회수시설 등

– 도지사는 위탁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협약 체결이 가능함(인센티브 지급)

❷ 사무형 위탁 : 시설의 운영이 아닌 일반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예)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 등

○ 수익창출형

– 도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 · 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 도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 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

–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시설위탁이 수반되므로 인센티브 지급과 근거법령 등은 시설형 위탁과 동일하게 적용

3. 민간위탁시 도의회 보고·동의

○ 도의회 동의(조례 §7③)

– 재위탁 · 재계약 :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3회차 재위탁 · 재계약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장기위탁사무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일몰제 실시

– 3회차 민간위탁 종료 후, 사무 수행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민간위탁 필요 시 신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 3회차 종료 후 민간위탁사무로 연속 추진 시 민간위탁사무심의 후 의회동의 필요

○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는 재위탁 · 재계약 의회 동의(보고) 시 성과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조례 §19③)

※ 의회 동의(보고) 절차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따름

의회 동의 시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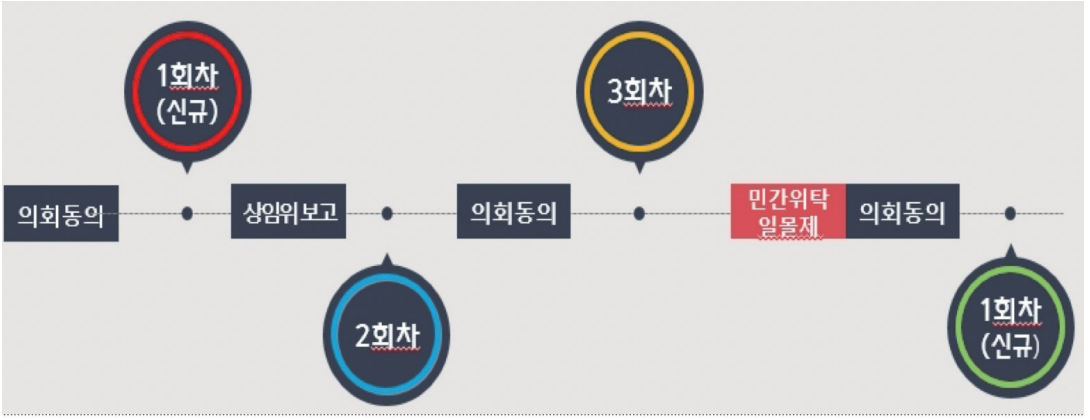

4. 충청남도 민간위탁 현황(`23~`25)

○ 2025년도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는 총 50개, 총액 38,015,705천원

–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 및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단위: 천원)

연도	위탁사업수	총액	국비	도비
2025	50	38,015,705	6,796,263	31,161,566
2024	51	29,220,197	5,341,782	23,820,539
2023	47	25,977,955	5,125,661	20,767,418

○ 민간위탁 추진의 장점은 민간부문의 경쟁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음

– 모든 위탁 기관이 공공서비스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위탁 운영비용이 예상보다 증가, 단기 계약으로 인한 종사자 고용 불안정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위탁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체계 강화가 필수적 요소임

5. 민간위탁 타시도 언론보도

[△△시의회] 제도 허점 악용한 '무분별한 민간 위탁' 개선 촉구

[스트레이트뉴스] _ 2023. 8. 31.

▷ 000 △△시의회 의원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 위탁제도 허점 악용한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 시에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전수조사와 위탁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원은 "시가 신생 법인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 중 '법인전입금(재정부담액) 평가 배점'을 축소 조정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시 복지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

○○의원은 "수십,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임의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서 "법인만 위탁 가능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단체, 개인까지 운영 가능한 보육시설 위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

즉 임의단체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고, 공익적 목적이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하는 비영리성 단체로, 친목회, 동문회, 종친회, 계 모임 등을 주로 임의단체로 설립한다는 설명

이어 "조사 과정에서 1개의 임의단체가 전국적으로 164개, 285개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임의단체는 비영리성 단체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점, 별도의 명칭 제한이 없어 '재단'이나 '연구소' 등 '재단 법인'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단체명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 규제와 법망을 피해 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 · 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이에 시 □□□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위탁 절차에 특정 단체를 별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재위탁 횟수 제한, 위탁시설 수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함

○○의원은 **“법인들의 설립 당시 출자금이 상당 부분 잠식되거나, 음성적으로 법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라며 “부실 법인 정리를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성”**을 거듭 제시

▽▽▽ □□시장은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제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변

공공기관 위탁·대행

1. 지침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2025년 본예산 의회 심의시 도 의회 분석보고서 및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마련 요구*

* 수수료에 대한 과도한 재량으로 세출예산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저해
  1. 매년 반복되는 동일 위탁사무에 대한 연도별 위탁 수수료율 차이
  2. 유사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간 수수료율 차이
  3. 수탁기관의 자체 수수료율 기준의 합리성 의문

※ '21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10% 이내(과거 0%~22.5%)

□ 주요 개정 내용

○ 위탁 · 대행 계약 체결시 수수료율 기준 정립

– 道 출자 · 출연기관(보조기관 포함)의 자체 규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시 **사업비의 5%* 이내에서 결정**

* 출자 · 출연기관(보조기관 포함) 자체 규정상 수수료율 5% 초과시 해당 기관 규정 개정(단, 해당기관 ↔ 주관부서 별도 협의시 초과 가능)

현 행	개 정 안
〈수탁 · 대행 기관 선정 및 적정성 검토〉 〈 신설 〉	〈p.7〉 □ 위탁 · 대행 수수료율 ○ 道 출자 · 출연기관(보조기관 포함)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 산정시 사업비의 최대 5%*이내에서 결정 * 출자 · 출연기관(보조기관 포함) 자체 규정상 수수료율 5% 초과시 해당 기관 규정 개정(단, 해당 기관↔주관부서 별도 협의시 초과 가능) ○ 상위 법령, 국비 사업의 개별 규정에서 수수료 등 경비 처리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 적용 가능 (주관부서 협의 및 道 예산부서 통보 필수)

※ 출처: 2025.10.13.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운영 지침

2.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개념

□ 목적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공공기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정부 출자 · 출연기관 등

②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우리 道 출자 · 출연기관 15개

공기업 공사(1)	출연기관(14)
충청남도 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사회서비스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위탁

○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대행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 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 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대행사업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포함

업무의 대행 제도(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인용)

- 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의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만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는 것이므로, 대행의 결과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에 이전하는 취지라면 위임 · 위탁을 통해 행정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절차

사무의 수탁 · 대행 기관 선정 및 적정성 검토 (주관부서)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 수탁 · 대행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신설) • 수탁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과 측정 용이성, 관리 · 운영 투명성, 책임행정 보장성
⬇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 ·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 위탁 · 대행 추진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심의 • 위원장(민간위원 중 선출)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도의회 동의 ※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위탁 · 대행 보고서를 미리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 (주관부서)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 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 ·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도의회에 위탁 · 대행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미리 동의안 제출 • 예외사항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업비 전액에 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3.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위탁 · 대행 사무명, 수탁 · 대행기관 등 위탁 · 대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4.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 대행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무(사후보고 가능)
⬇	

예산편성 (주관부서)	•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 편성 • 위탁 · 대행 시기의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편성 가능 ※ 도의회 위탁 · 대행 동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약체결 (주관부서, 수탁기관)	• 계약체결 주요내용(제6조제2항) 1. 수탁 · 대행기관의 명칭 · 소재지 2. 위탁 · 대행의 목적 3. 위탁 · 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 대행기간(3년 이내) 5. 위탁 ·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등
⬇	
성과평가 및 환류 (주관부서)	• 평가대상 : 모든 위탁사무(다른 법령 적용시 예외) • 평가내용 : 위탁 · 대행사무 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 • 평가방법 : 별도의 평가계획 부서별 자체수립 후 실시 • 결과활용 : 재계약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4. 위탁·대행의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 도의회 동의 대상(신규, 재위탁·대행 모두 포함)

○ **(원칙)** 도지사 사무의 위탁 · 대행은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 · 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 대행 시기의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 편성 가능

□ 도의회 사전 동의 제외 대상 및 절차 ※ 예산담당관실 협의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도의회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제외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위탁 · 대행 추진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중략) …을 말한다.

법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영 제6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2. 사업비 전액에 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3.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위탁 · 대행 사무명, 수탁 · 대행기관 등 위탁 · 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4.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 대행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수탁 · 대행기관이 수탁 · 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 · 운영비 포함

6. 재난, 재해 등 위탁 · 대행을 통하여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무

   ※ 이 경우, 조례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

□ 위탁 · 대행사업 의회 동의안 제출 절차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 안건 처리절차를 따름

□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탁 · 대행 사무명 및 내용

○ 위탁 · 대행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위탁 · 대행사 기관의 현황, 위탁 · 대행기간,

○ 위탁 · 대행 사무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적정성 검토 결과(제3조), 위원회 심의 요청서 및 결과(제4조)

○ 다시 위탁하거나 위탁 · 대행 기관이 미리 명시 되어있는 경우 평가 및 성과보고서 등

□ 예산편성 시기

○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 요구 · 편성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시기적 불가피성으로 위탁 · 대행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도의회(소관 상임위)와 협의

○ 위탁 · 대행 시기의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긴급한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 위탁 · 대행의 긴급 추진 전 예산담당관실 협의

5. 실적보고 및 성과보고

□ 실적보고

○ 수탁 · 대행기관은 위탁 · 대행을 마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도·감독

○ 도지사는 수탁 ·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 대행기관을 지도 · 감독함

–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서류 · 시설의 검사

– 수탁 ·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정지(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정산 등

○ 도지사(사업부서)는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검사를 실시

※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 · 반납 미비 등 도의회 지적이 지속 발생하므로, 주관부서는 수탁 · 대행기관의 사업비 집행, 정산, 이월 등 관리에 철저

○ 도지사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 · 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함

○ 수탁 · 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 · 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환해야 함

– 특히, 도 공공기관에 위탁 · 대행한 경우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 · 반납 필수 이행

□ 성과평가 실시(조례 제12조)

○ **평가대상**

– 원칙 : 모든 위탁사무

– 예외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적정성, 전문성

– 재정운영 효율성(위탁대행금 관리의 적정성, 집행의 효율성 등)

– 지역사회 기여도(물품 구매 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지역전문가 활용)

– 사업계획의 수준(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자체점검, 규정 준수, 투명성 등)

– 사업 활성화 및 개선노력 등

○ **위탁(대행)사무 세부 성과평가표(예시)**

평가 영역	평가 범주	평가 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 배점	평가 점수	세부 배점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가 방식
공통 사무 (50점)	사업 인프라 (25점)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0.00		5.00	2	4	6	8	1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5.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위탁(대행)금 관리의 적정성	10.00		3.00	2	4	6	8	1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00						정성
			②-3 위탁(대행)금 사용의 지정목적 사용 여부			4.00						정성
		③ 지역 활성화 기여	③-1 물품구매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5.00		2.00	1	2	3	4	5	정성
			③-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능력			3.00						
	사업 활동 (25점)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15.00		5.00	3	6	9	12	15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5.00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5.00						
		②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10.00		4.00	2	4	6	8	1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3.00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3.00						
개별 사무 (50점)	사업 성과 (45점)	①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 각 위탁사무 성격에 맞게 담당 부서에서 지표 개발		45.00		45.00						정량 / 정성
	지도 점검 이행 노력 (5점)	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2.50						정량
		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0						정성
감점 사례		①-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①-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①-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①-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①-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순세계잉여금

1. 순세계잉여금 개요

□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

○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반납액, 지방채상환액을 차감한 순수한 잔액을 말함**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금+보조금반납액+지방채상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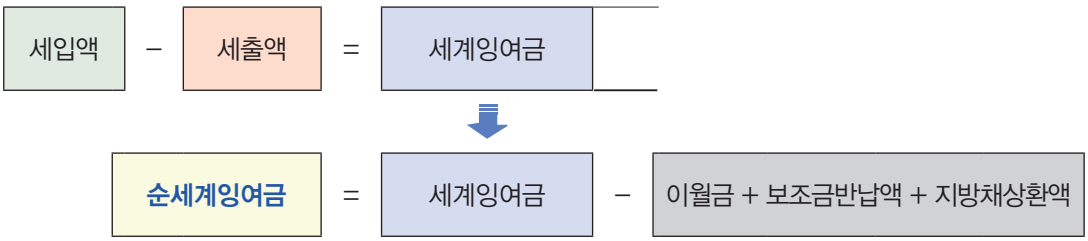

□ 「**지방회계법**」 **제19조**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 · 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세수 부족에 대비한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참고자료: 고철수[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2015.1.20.)

□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점

○ 불용액의 발생원인으로는 ① 사업예측 착오, ②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 ③ 예산의 과다계상, ④ 자체예산 절감, ⑤ 예산집행 잔액, ⑥ 예산의 미집행 · 지급사유 미발생, ⑦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위의 발생원인 중 ④항 원인은 장려할 만 하지만 대부분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일반적으로 ①, ②, ③항의 사유가 가장 많으며 매년 재발되고 있는 상황임

○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남

○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빈도가 높고 그 금액이 예산대비 과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됨

– 평균 2~3회 이상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과 절차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거의 연중 상시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1) 조기추경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조기 추경을 통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 · 민생안정 · SOC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도민 생활안정 및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출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경제 활동의 기초체력을 다져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2)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감채기금 조성액을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채무비율이 높은 서울시 및 부산시의 경우 현재 감채기금 적립율이 50%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음

3) 순세계잉여금 결산 전 이입활용

– 재원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산 이전이라도 잉여금을 당해연도 세입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결산 전 세입이입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의도적인 추가경정 예산성의 관행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한 경우 그 타당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적극 활용 시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사업이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예산의 이연에 따른 예산확대에 따른 착시 효과도 줄일 수 있음

3. 순세계잉여금 결산심사 초점

참고자료: 류춘호, [지방의정-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TPN 칼럼(2021.5.26.)

○ 순세계잉여금 발생 구조를 통해서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세입추계의 정확성

–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첫째, 세입의 과부족은 당초 추계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당초 추계한 세입보다 많은 경우 초과세입이 발생함. 지방의회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2) 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환

–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자 수입에 대한 반환은 세입으로 편성한 후 세출로 지출해야 함. 지방의회는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보조금의 집행 성과, 정산결과와 반영 상황도 확인해야 함

3) 불용액 및 예산편성 · 집행의 적정성 심사

– '불용액'은 세출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함. 이는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만 집행된 경우 등에서 발생함. 불용액은 ① 세출 예산을 잘못 예측 ·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② 사업 변경이나 축소 등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지방의회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음

4) 법정잉여금의 처리 여부 확인

– '법정잉여금'은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함. 법정잉여금은 법령,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구성됨

– 법정잉여금의 구성 항목으로는 첫째,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둘째, 교육청 지원 관련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셋째, 특별회계 전출금, 넷째, 법정기금 전출금, 다섯째, 지방채 상환기금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 여섯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이 있음

– 지방의회는 조정교부금이나 교육재정교부금이 전출되지 않아, 잠재적 부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

5) 다음연도 이월액의 공제 및 발생 원인 확인

– 이월액은 지방정부가 예산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임. 지방의회는 이러한 이월 발생원인과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산승인 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결산 초점임

4. 충청남도 및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현황

○ 최근 4년간 충남도청 순세계잉여금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①)	세출(②)	세계잉여금(③=①–②)					순세계잉여금 비 율
			소계	이월금	보조금 반납액	지방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2024	10,781,843	10,511,075	270,768	264,097	3,866	0	2,805	0.02
2023	10,215,562	9,871,307	344,255	242,809	12,018	0	89,428	0.8
2022	10,258,448	9,614,957	643,491	308,296	4,322	0	330,873	3.2
2021	9,782,518	9,251,942	530,576	284,208	3,917	0	242,451	2.4

– 충남도청은 최근 다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0억원~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금회 2024회계연도에는 28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아은 수준으로 감소함

–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되고 있으나, 외부차입금 상환은 전무한 실정

– 특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4억원으로 나타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마이너스 발생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4년간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①)	세출(②)	세계잉여금(③=①–②)					순세계잉여금 비 율
			소계	이월금	보조금 반납액	지방교 육채상환	순세계 잉여금	
2024	5,184,388	5,018,539	165,849	121,616	484	0	43,749	0.8
2023	5,226,710	4,965,244	261,466	193,548	1,199	0	66,722	1.27
2022	5,651,377	5,420,954	230,423	177,778	1,211	0	51,434	0.91
2021	4,413,060	4,250,962	162,098	117,077	1,956	0	43,065	0.98

– 충남교육청은 최근 다년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5. 타시도의회 언론보도

1 [ㅁㅁ도의회] '재정건전성 악화 주범 '순세계잉여금' 손본다'

[경기신문] _ 2025. 2. 3.

▷ 순세계잉여금이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 · 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비용으로 기존 세입예산보다 적게 지출하거나 수입이 많으면 발생하게 됨

▷ 이는 정책사업 등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으로 도 산하기관 28곳의 불용액만 한해 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게 ○의원의 설명

▷ ○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도 산하기관에서 매년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

▷ 그러면서 "기존 조례에서 도의 위탁사업비는 정산을 통해 반환하게끔 돼 있다"면서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에 관한 조항이 명확지 않기에 조례 개정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2 [ㅁㅁ도의회]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1조 육박…'세입예산 방만편성' 논란

[KPI뉴스] _ 2024. 12. 10.

▷ ㅁㅁㅁ교육청의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조 원 가까이 발생하는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있어 예산 편성이 방만하다는 지적

▷ ㅁㅁㅁ교육청의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20년 2.6%, 2021년 3.0%, 2022년 3.53%, 2023년 4.0%로 매년 높아져 세수추계 및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위원(국힘)은 "최근 10년간 ㅁㅁ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17.6% 증가하고 있다"며 "ㅁㅁㅁ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

▷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집행부분을 신경써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로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예산회계 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III. 회계.결산 단계

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 개념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특정 지자체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의 비율을 의미함. 자체재원은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세원임

–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냄

– 재정자립도 지표는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지방재정의 발전적 운영 등에 활용

–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평가하는데 흔히 예산상 재정자립도가 자주 활용

▫ **재정자립도 산정 공식**

재정자립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 100(%)

□ 재정자주도

○ 세입 결산 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로 산정하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이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재정자주도 산정 공식**

재정자주도=(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 100(%)

*자제수입 :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임

〈 재정자립도 Vs 재정자주도 〉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정의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	자체수입 + 의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비율
계산식	자체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의미	재정의 독립성을 나타냄	재정의 자율성을 나타냄
특징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독립도 판단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집행 능력판단
관계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재정자주도는 일정 수준 유지 가능 (교부세 등으로 보전)	

2.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 지방 재정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수입 및 지출 측면에서의 재정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인구 규모, 보유자원,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활동, 지방세제, 중앙정부 지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지방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함. 대표성 및 정책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 **수입 다각화 촉진이 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유치와 관광 산업 개발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킴

▲ **새로운 수입원 발굴 중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지역 자원 활용 방안으로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개발하여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세수를 확대

○ 재정 효율화를 위해선 ▲예산 절감이 필수적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이를 위해 ▲성과 중심 예산 편성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40.29%, 도 33.76%, 시 26.67%, 군 12.31%, 자치구 21.78%로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자치구 〉 군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음

–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서울 본청(73.62%)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경북 영양군(6.08%)으로 나타남

〈2025년 전국 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73.62	40.29	33.76	26.67	12.31	21.78
최고	73.62	54.31	45.36	53.69	31.75	55.71
(단체명)	서울본청	세종본청	경기본청	경기성남시	울산울주군	서울중구
최저	–	35.53	22.93	8.37	6.08	9.49
(단체명)		광주본청	전북본청	경북상주시	경북영양군	부산영도구

자료: 지방재정365 재정지표

○ **2025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분포현황을 보면**

–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낮은 재정자립도 구간(10~30%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10% 내외의 자립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등 자체 수입 기반이 열악함을 시사함

〈2025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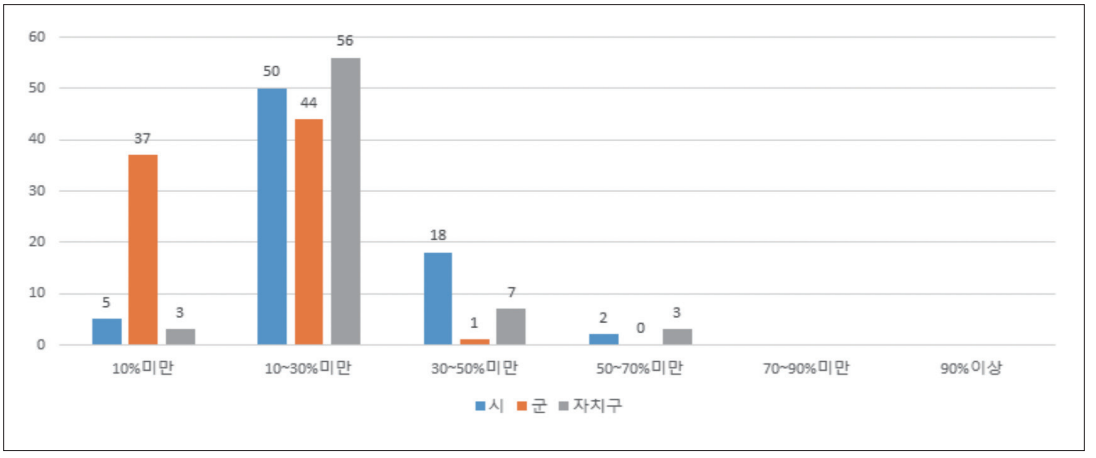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365 재정지표

○ **2025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분포현황을 보면**

- 서울특별시가 73.62%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였으며, 세종시(54.3%)와 경기도(45.4%) 순임. 이는 수도권 지역의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짐

- 20% 중반대를 보이는 전라북도(23.64%), 전라남도(23.66%), 경상북도(24.35%), 강원도(25.72%)등 비수도권 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자립도 수준을 보임

- 이러한 수치는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

- 전체적으로 볼 때, 시도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최대 50%p 이상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재정 여건의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임

-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자체 세입만으로는 필수 행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됨

〈2025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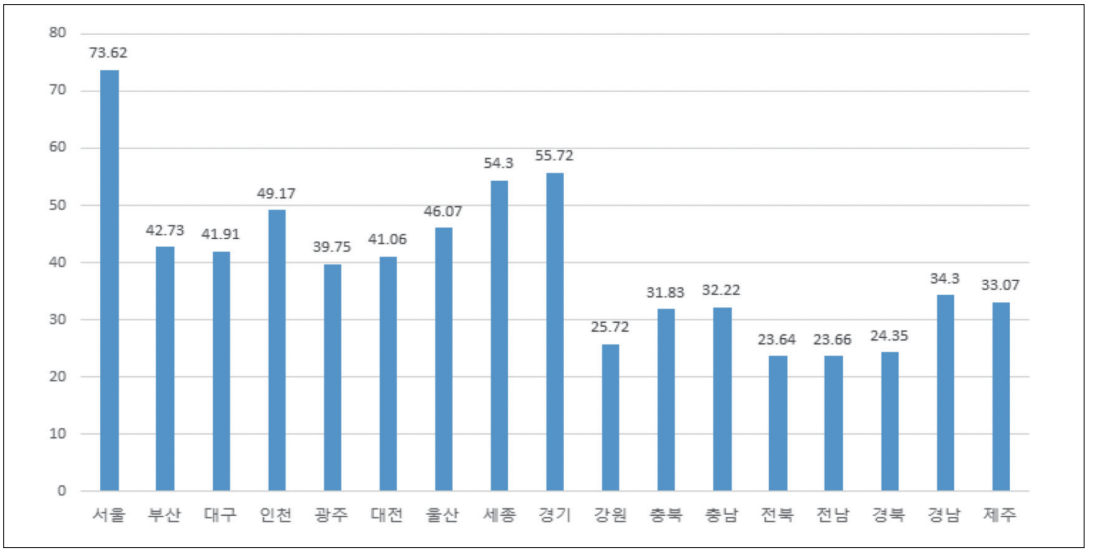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365 재정지표

4. 2025년 충청남도 재정자립도 현황

〈2025년 충청남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천원)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소계 (A+B)	지방세 (A)	세외수입 (B)	일반회계예산
충남계	32.22	5,502,476,585	4,906,912,528	595,564,057	17,076,183,308
충남본청	31.64	2,983,515,931	2,835,600,000	147,915,931	9,430,900,000
충남천안시	33.65	706,746,000	600,000,000	106,746,000	2,100,000,000
충남공주시	12.87	120,086,920	90,430,000	29,656,920	933,300,000
충남보령시	13.56	117,379,335	72,548,000	44,831,335	865,671,000
충남아산시	32.37	526,393,661	470,000,000	56,393,661	1,626,400,000
충남서산시	18.63	209,626,363	177,900,000	31,726,363	1,125,346,515
충남논산시	10.65	105,239,803	78,643,000	26,596,803	987,812,209
충남계룡시	14.46	34,420,363	29,200,000	5,220,363	237,967,725
충남당진시	21.62	228,546,000	192,546,000	36,000,000	1,056,993,249
충남금산군	9.27	62,715,807	48,018,300	14,697,507	676,263,000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소계 (A+B)	지방세 (A)	세외수입 (B)	일반회계예산
충남부여군	10.01	69,993,250	41,100,000	28,893,250	699,300,000
충남서천군	8.92	61,671,319	39,540,000	22,131,319	691,614,000
충남청양군	9.32	51,004,897	28,969,000	22,035,897	547,000,000
충남홍성군	13.74	106,794,560	75,405,228	31,389,332	777,200,000
충남예산군	13.69	112,851,904	72,940,000	39,911,904	824,591,554
충남태안군	12.46	81,955,948	54,073,000	27,882,948	657,824,764

자료: 지방재정365 재정지표

○ **도 전체 평균은 32.22%이며, 전국 도평균 33.76% 보다 낮음**

– 자체수입이 일반회계 예산의 약 1/3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함

○ 기초지자체 중 천안시(33.65%)가 가장 높고, 서천군(8.92%)이 가장 낮음

– 천안시는 지방세 수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재정자립도도 가장 높음

– 반면 서천군, 금산군, 청양군 등은 10%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교부세 ·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구조임

○ 총괄적으로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 취약 지역이 많고, 특히 군 단위는 자립 기반이 약함

– 이는 자체 세입 기반의 확충이 어렵고, 중앙정부 및 도재정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임을 보여줌

– 따라서, 지역별 맞춤형 세수 확대 전략(예: 공공자산 활용, 공유재산 수익화), 교부세 외의 자율적 재정확보 수단 마련이 필요함

– 동시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분권 및 균형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VI. 재정 공시.평가 단계

지방재정 공시제도

1. 도입 배경

□ 도입 배경

○ **주민의 알 권리 충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예산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움

– 자치단체마다 간략한 예산운영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그 형식이 자치단체마다 각기 상이하며, 공개하는 범위 역시 천차만별

–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민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통제기능을 강화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 주요 예산항목의 공개를 통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서 재정운영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

2. 개요 및 근거

□ 개요

○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함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운영 중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는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관할 시 · 군 · 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2022. 11. 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4년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 사항

□ 개선 사항

○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

* 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5개 주요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

○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

* 유형평균은 재정규모 및 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표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
-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각 항목의 해당연도 값, 전년도 값, 유형 평균

□ 지방재정 공시 주요항목

· (예산) 세입 ·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 예산 · 행사 축제경비 및 국외여비 편성현황 등

· (결산) 세입 · 세출결산, 재정자립도, 부채 · 채무현황,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 행사 축제원가회계 정보 및 투자사업 현황 등

4. 2024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게시) 매년 2회(예산기준 2월, 결산기준 8월) 위원회 심의 후 홈페이지 등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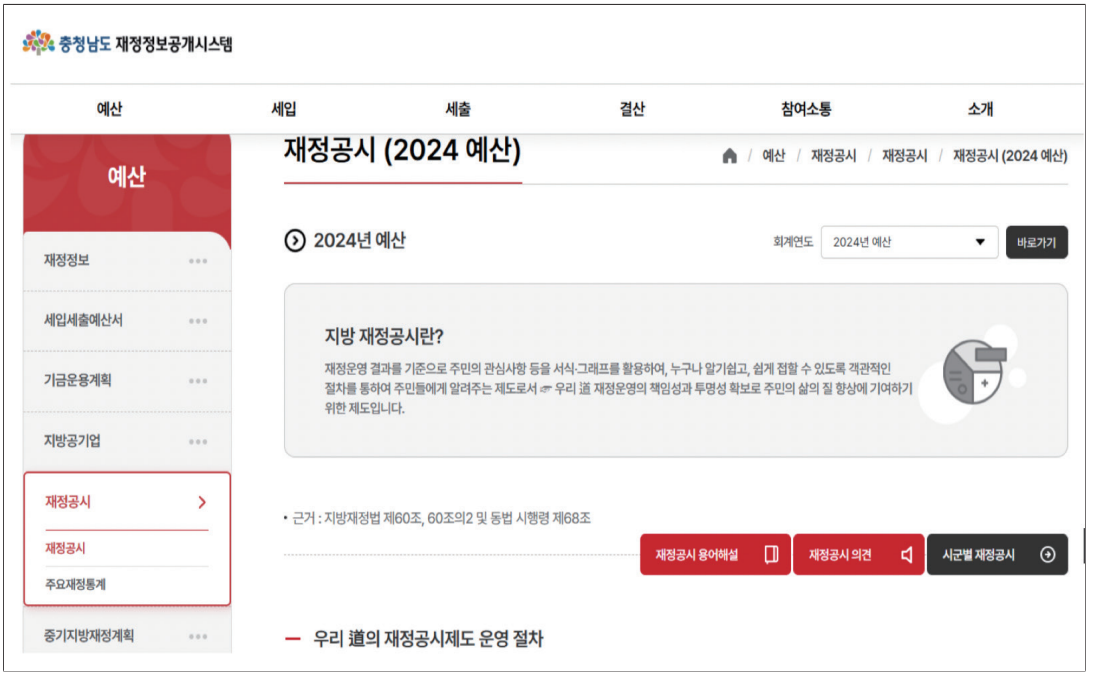

□ 주요내용

① (예산규모 분야) 세입 · 세출예산은 10조 8,109억원으로 전년대비 9,202억 증가

(단위 : 억원, %)

주요항목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세입 · 세출예산	108,109	98,907	9,202	9.3%
지역통합재정통계*	171,152	163,043	8,109	4.97%

*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충남개발공사, 출자 · 출연기관(14개)의 재정상황 종합

② (재정여건 분야) 재정자립도 32.2%, 재정자주도 43%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 통합재정수지는 -4,446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규모 증가(-2,328억원)

(단위 : %, 억원)

주요항목		2024년	2023년	증감
재정자립도(%)		32.2	34.4	-2.2%p
재정자주도(%)		43.0	46.2	3.2%p
통합재정수지* (억원)	1	-4,446	-2,118	-2,328
	2	-3,280	-1,963	-1,317

* 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참고 1 2023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통합공시

자치단체 재정공시 (22개)		행안부 통합공시 (20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예산규모 (3)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예산규모 (3)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여건 (3)	•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재정운용 계획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현금성 복지비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재정운용 계획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비율 • 재정운용상황개요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현금성 복지비 • 1인당 경비 편성현황
재정운용 성과 (4)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재정운용 성과 (4)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행안부 통합공시 외 자치단체 재정공시 추가항목

참고 2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6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 채권 (12)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 · 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 채권 (7)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출자 · 출연기관 부채현황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보증채무 비율 •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7)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 사회복지비	복지/	•사회복지비비율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6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민간지원 (6)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민간지원 (3)	•지방보조금비율 •행사 · 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 · 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출자 · 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 평가 (14)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 · 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신속집행 실적 • 감사결과	재정성과/ 평가 (7)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 행안부 통합공시 외 자치단체 재정공시 추가항목

5. 지방 재정 공시 관련 언론 기사

□□시 기금운용 계획 허위 공시...시의회 "의결권 무시 · 위법행위"

○○일보. 2024.06.23.

■ □□시가 기금운용 계획을 시의회 의결안과 다르게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의회 의결권(예산의 심의 · 확정)과 주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

□□시의회는 23일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지방의회의결권을 무시한 시의 행태가 상식 이하"라고 비판

■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539억3,0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지방재정공시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안보다 31억원 많은 '2,570억6,000만원'으로 공표된 것으로 밝힘

■ 이 같이 임의 변경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 · 운용 중.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기금운용계획이 행안부에 정식 보고된 상황이어서 자료나 예산 총액의 수정 가능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

■ 시의회는 "예산 심의 · 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 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시의회 의결 내역과 다르게 공표 · 운영할 수 없다"면서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결권 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

■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 △△△ 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보다 증액된 기금을 공표 ·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 부당행위로,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라며 "의회 의결과 다르게 기금 규모를 다르게 공표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

■ 이어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중복된 자료 검증 시스템이 없어,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힘

VI. 재정 공시.평가 단계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1. 제도 필요성 및 도입 근거

□ 제도운영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유치 · 개최하는 국내 · 국제 경기대회 축제 · 행사 및 공모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

– 더불어 중앙관서의 법령 · 예산안에 의한 일방적인 비용 부담 전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과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 · 개정안과 예산안에 있어 사전에 지방재정 부담 정도 등을 평가할 필요성 제기

□ 제도도입의 근거

○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지방재정법」제27조의 6에 근거하여 2014년 11월 29일에 도입된 제도로 평가대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규정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장관 훈령으로 「지방재정 영향평가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지방재정법령 및 동 지침에 따라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재정 영향평가지침」 규정된 필수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 등이 가능함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 · 국제경기대회, 축제 ·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 국제경기대회 및 공연 · 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 · 도: 30억원

나. 시 · 군 및 자치구: 10억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평가대상 및 절차

□ 평가대상 및 범위, 항목

○ 지방자치단체 중 시 · 도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시 · 군 ·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국내 · 국제경기대회 및 축제 · 행사를 개최(응모, 유치) 할 경우

– 그리고,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비가 50억 원 이상인 신규 공모사업에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

* (광역)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기초)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50억원 이상

○ 이때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축제 · 행사성 사업 및*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총사업비가 전년 (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규모, 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원의 성격 규모 및 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며 자체사업 예산대비 지방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조달 여력을 평가함

○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 · 개정안, 세입 · 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0%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함

○ **중앙부처는** 해당 사업 (법령 등)의 사업기간별 재원(국비,지방비)규모 및 지방비의 용도 지방재정 부담 규모 및 시도별 내역 등을 검토하여 중앙부처의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평가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를* 받음

* 매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15일, 10월 25일 까지)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심사 및 서면심사도 가능

– 평가 결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 절차〉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 재정계획 ➡ 지방재정 투자심사 ➡ 국비 등 보조금 신청 ➡ 예산 편성 ➡ 지방의회 심의 및 예산확정

○ **중앙부처는** 법령 제 개정안의 경우 법령 입안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세입 · 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평가서를 작성하며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영향평가(예산안) 시행 절차〉

국가재정운용 계획수립 ➡ 지방재정 영향평가 ➡ 국고 보조금 부담비율 산청 ➡ 예산요구서 작성 ➡ 예산 편성 ➡ 국회 심의 및 예산확정

3. 2024년 충청남도 지방재정 영향평가 실시 현황

□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현황

○ 2024년 **충청남도 본청 지방재정 영향평가 실시한 사업은 총 3개**

– 3개 모두 영향평가 결과 적정판정, 2025년 예산편성 추진

구분	세부 사업	사업 유형	부처사업		사업 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부처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충남	2024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② 공모 사업	2024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행정 안전부	2024 ~ 2026	10,000	5,000	1,500	3,500	–
충남	k–헤리티지 체험 플랫폼 조성	② 공모 사업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24 ~ 2028	12,000	6,000	3,000	–	3,000
충남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② 공모 사업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025 ~ 2027	20,250	6,750	2,025	4,725	6,750

□ 유사제도 비교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경기대회, 축제 · 행사 개최 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취지상,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는 다름

〈 유사제도 비교 〉

구분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① 국내 · 국제 경기대회, 축제 · 행사(30/10억) ② 공모사업(총사업비 100억, 지방비 50억)	① 신규 투자사업 ② 행사성 사업 ③ 홍보관 사업 ④ 청사 신축 ⑤ 문화 · 체육시설 신축 ⑥ 채무부담행위
시기	▶(축제 · 행사) 개최계획서 작성 시 ▶(공모 · 응모사업) 신청 전	▶계획 수립 이후부터 예산편성 전까지 ▶공모 선정(국비 확보) 후
기준	① 재정현황 대비 사업 규모(기간, 내역) ② 재정부담의 적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① 필요성 및 타당성 ② 국가계획 부합성 ③ 지방재정계획 연계성 ④ 소요자금 조달 ⑤ 재정 · 경제적 효율성 ⑥ 일자리 창출 효과
주체	자체평가	자체심사 + 의뢰심사 (기초→광역 / 기초, 광역→중앙)

VI. 재정 공시.평가 단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지방재정법」제60조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개최한 모든 행사 · 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분석 ·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 투명성 제고

□ **「지방재벙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중간 생략)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추진경과)**

– 원가회계정보 공개제도 도입(2010년 2월)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표 시범운영(2011년 11개, 2012년 전 자치단체)

–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2013년), 공개대상 확대(2014년), 공개대상 全 행사 · 축제로 확대(2015년~)

구 분		2017년 공개 (2016 개최)	2018년 공개 (2017 개최)	2019년 공개 (2018 개최)	2020년 공개 (2019 개최)	2021년 공개 (2020 개최)	2022년 공개 (2021 개최)	2023년 공개 (2022개최)	2024년 공개 (2023개최)
자치단체 개별공시	대상	**全 행사 · 축제**의 총원가 (운영비 세분화 17개 항목)							
	결과	17,075건/ 7,770억원	17,422건/ 8,172억원	17,719건/ 9,021억원	17,297건/ 9,283억원	6,432건/ 3,280억원	8,488건/ 5,119억원	12,406건/ 9,031억원	15,115건/ 11,537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2024년 개최) 지방자치단체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2. 공개 대상의 개념 및 분류

Ⅰ 행사·축제 개념

○ 행사 · 축제는 자치단체가 주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이벤트이며, 행사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

구 분	개 념
행사	주민화합,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
축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 주민의 정체성 제고,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지역별 축제 등

○ **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유 형	내 용
① 사회적 약자배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구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행사 · 축제(장애인 활동지원 행사, 경로잔치, 다문화가족 지원행사, 채용박람회 등)
② 지역특산물 ·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특산물 전시 · 홍보 · 판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 축제(나눔장터, 전통시장 토요문화 공연,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향토음식 먹을거리 장터 운영 등)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대회, 놀이행사, 경연대회(단체장배 체육대회, 마라톤 · 등산 등 각종 동호인 대회, 전국(도민, 시민)체전, 주민단합 체육대회 등)

유 형	내 용
④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홍보	전통문화 계승 · 발전,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행사 · 축제 (영화 · 연극 · 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 · 축제, 관광축제 등)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회의 · 전시 · 관광 · 체육 등)(국제전시회, 국제그린에너지EXPO, 국제영화제, 국제보트쇼 등)
⑥ 기타	①~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 · 축제

3. 공개 대상의 범위 및 내용

Ⅰ 작성주체 및 공개범위

○ **작성주체 :**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

※ 광역과 기초 공동개최인 경우, 예산액, 대회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개최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기관에서 작성 및 공개

○ **대상범위 :** 2024년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모든 행사 · 축제

– 직접 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등 간접 집행도 공개대상에 포함

공개범위		공개내용	비고
자체공시 (지자체)	全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및 총원가* 공개 (운영비 세분화 17개 항목)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연도별 원가정보 비교
통합공시 (행안부)	광역 5억↑집행 기초 3억↑집행		

*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따른 원가 금액 기준(원가는 집행액**에 없는 비현금지출인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

** 집행액은 현금주의 예산결산에 따른 집행금액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204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57개, 개별법률 147개)
* 붙임 : 〈붙임2〉 법정기념일 현황
– 시 · 도 및 시 · 군 · 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 ·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 공개내용

○ **원가회계 관점에서의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공개**
– 총원가는 인건비, 운영비(14개 항목), 감가상각비, 기타로 구분(총 17개 항목)
– 수탁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 수익과 별도로 표기
– 원가회계 관점 이외 소득 및 고용유발효과 등 간접효과도 공개
– 사업목적 · 내용, 운영방식, 시행주체(주최) 및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등 공개
* 시행주체(주최) : 행사 · 축제를 기획 · 시행하는 주체
수탁기관(주관) : 민간위탁 또는 산하기관 출연의 경우 수탁기관명 또는 산하기관명(행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회사명)
후원기관 :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움을 주는 기관 · 단체 · 회사 등

○ **행사 · 축제의 효과(결과) 필수입력 공개**
– 재정투자심사 및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행사 · 축제의 효과(결과) 중 지역경제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료입장객수, 입장수익을 필수항목으로 입력하여 주민에게 공개

○ **연도별 비교**
– 직전년도(2023회계연도)와 당해연도(2024회계연도) 원가정보 비교
– 비교내용 : 17개 항목 비교
※ 2023년, 2024년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내용과 동일하게 작성(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3 향후 일정

□ 자치단체

○ **(자료조사 · 입력)** 2024년 개최된 모든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를 e호조시스템에 입력 후, **전수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7.25.까지)**

* e호조시스템을 통해 시 · 군 · 구 → 시 · 도 → 행안부로 전송(목록)

○ **(자체공시)**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8.31.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일정에 따라 공시, 공시 결과 행안부(재정협력과) 제출

4. 충청남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현황

1 개요

○ 지방재정 낭비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전시성, 선심성 지역행사 및 지역축제임. 예산집행 낭비를 막고자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투자사업심사(1억원이상~3억원미만의 시군구의 행사성 사업, 3억원이상~30억원미만 시도의 행사성 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3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주요재정사업평가(모든 행사축제 대상의 사전 · 사후평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한 사업관리, 행사축제 원가회계공개제도 등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행사 · 축제를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선 안됨. 하지만 원가는 상승하고, 원가대비 사업수익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고, 지역적 특색을 가지지 않는 행사나 축제는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음(나라살림연구소,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 2022.5.26.)

2 충청남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현황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정보 〈 재정공시 확인 가능

○ 충청남도 2023년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 · 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 · 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 · 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3년(A)	20	5,479,390	9	5,226,586	5,226,586	11	252,804	252,804
2022년(B)	21	18,759,034	6	18,450,221	18,450,221	15	308,814	308,814
증감(A–B)	△1	△13,279,644	3	△13,223,635	△13,223,635	△4	△56,009	△56,009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일정에 따라 공시 2024년 자료는 8월 31일까지 공개 예정

○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 · 축제 현황「참고자료」수록

3 활용 포인트

①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에 대한 부담액과 사업수익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임. **사업별 원가항목을 통해 필요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지출근거 확인 필요**

② 행사 · 축제에 대한 전수자료 요청을 통해 **공대개상 사업 중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원가 공개사업과 비공개사업의 증감율을 파악. 또한 **효과가 미흡하거나 의심스러운 행사 · 축제 대해서도 기대효과 산출 근거를 요청함**

③ 사업수익 중 보조금을 제외한 서비스요금 **수익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수익성 강화 노력을 평가**함

〈2024년(2023년 추진) 주요 재정사업 평가_행사성 사업 중 미흡 평가등급 현황〉

연번	회계년도	부서명	통계목명	부기사업명	예산액(천원)	최종(민간평가위원회 조정) 평가(4차)	
						평가등급	위원 총괄 평가의견
1	2023	청년정책관	행사운영비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6,480	미흡	예산집행률(18%) 매우 저조 청년네트워크 행사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연번	회계년도	부서명	통계목명	부기사업명	예산액(천원)	최종(민간평가위원회 조정) 평가(4차)	
						평가등급	위원 총괄 평가의견
2	2023	투자통상정책관	행사운영비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45,000	미흡	성과근거의 구체성 부족, 사업내용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 토론회 개최횟수로 성과평가에는 미흡
3	2023	정책기획관	행사운영비	도정현안 정책회의	30,000	미흡	참여율 저조,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부족, 정책자문위원회의 연례적행사, 사업구조 개선미흡 목표, 지표, 실적이 서로 맞지 않음
4	2023	인사담당관	행사운영비	퇴임식 행사 운영	4,950	미흡	낮은 예산집행율, 사업의 과정평가 및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부족 퇴임식 참여율 저조, 예산집행저조, 사업구조개선 필요
5	2023	운영지원과	행사운영비	시무식 개최	10,000	미흡	예산집행율 저조, 새해맞이 직원간 인사와 영상 메시지로 간소화
6	2023	운영지원과	행사운영비	충청남도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9,000	미흡	예산집행율이 미흡하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연계성미흡, 공직자 한마음대회와 통합운영 필요
7	2023	경로보훈과	행사운영비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사업	60,000	미흡	1회성 행상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8	2023	건강증진식품과	행사운영비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	8,000	미흡	1회성 행사보다는 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9	2023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충남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포럼개최	10,800	미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미흡함, 사업명은 포럼 개최이나 내용은 공연실시이고, 성과지표는 관람객수로 불일치.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공연참가 사업 적합성 재검토
10	2023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공 · 사립 박물(미술)관 직무연찬회 개최	9,000	미흡	예산집행율 저조, 사업성과 미흡
11	2023	체육진흥과	행사운영비	4S 정책아카데미 운영	17,280	미흡	사업추진실적 자료 미약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명확한 목표 및 지표 설정 필요
12	2023	농업정책과	행사운영비	청년 · 여성농업인 포럼	30,000	미흡	사업계획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 부족 사업평가 및 환류 미흡

연번	회계년도	부서명	통계목명	부기사업명	예산액(천원)	최종(민간평가위원회 조정) 평가(4차)	
						평가등급	위원 총괄 평가의견
13	2023	농업정책과	행사운영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50,000	미흡	연령, 다문화 등을 고려, 다양한 여성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고민 필요
14	2023	농식품유통과	행사운영비	직거래 참여농가 조직화 지원	4,050	미흡	사업내용은 워크숍 개최이나 이에 대한 내용 부재, 성과목표와 지표불일치 참여농가 감소대책 마련 필요
15	2023	대기환경과	행사운영비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21,038	미흡	환경 관련 실무자, 전문가 등 함께 하는 세미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사업명 변경 등 고민 필요
16	2023	회계장비과	행사운영비	도 단위 소방의 날 행사 운영 등	7,200	미흡	사업평가 점검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한 환류 미흡, 연간1회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이 요구됨
17	2023	회계장비과	행사운영비	소방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	10,000	미흡	사업운영 과정 평가 및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부족
18	2023	회계장비과	행사운영비	충남119소방동요경연대회 등	14,580	미흡	추진실적과 적합한 행사목적 재설정 필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운영에 통합 운영 필요
19	2023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행사운영비	농식품연구 공동 심포지엄	11,000	미흡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미흡
20	202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행사운영비	농식품 가공농가 경쟁력 향상교육	3,780	미흡	성과지표로 교육인원수만 설정되어 사업목적 달성 평가 어려움
21	202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행사운영비	귀농대학 운영	17,820	미흡	실적(수료율)이 낮은 원인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필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수료율이 더 적합
22	2023	충남도서관	행사운영비	충남도서관인의 날 행사 개최	7,000	미흡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 부족 성과목표와 설정인원수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인의 수가 명확하지 않으며 단순행사 개최로 사업목적 달성평가 어려움

참고자료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 ·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5,479,390	–	5,479,390	–	
1	⑥	2022충남건축 디자인문화제	2023. 10. 12. ~ 10. 15.	· 사업위치 :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행사장 (단년도 사업)	193,719	–	193,719	건축 도시과	041–635–4664
2	⑥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2023. 6. 1. ~ 10. 31.	·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 실시, 독립유공자 초청 만남의 날 행사	73,942	–	73,942	경로 보훈과	041–635–4219
3	⑥	충남 과채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2023. 7. 10. ~ 12. 27.	· '23년 토마토 신품종 Day 개최 · 신기술 현장접목 평가회 · 충남 과채산업 발전을 위한 과채류 세미나 등	5,452	–	5,452	과채 연구소	041–635–6369
4	④	백제문화제	2023. 9. 23. ~ 10. 9.	〈 2023 대백제전 〉 · 주제 :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 · 내용 : 디지털 실감 미디어아트관, 수상 멀티미디어 쇼, 친환경 프로그램, 웅진판타지아, 다시 보는 사비 백제의 예(禮), 웅진성 퍼레이드, 백제군 출정식 등 6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1,655,863	–	1,655,863	관광 진흥과	041–635–3882
5	⑥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MOU 세레모니	2023. 12. 13.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MOU 세레모니	33,149	–	33,149	교통 정책과	041–635–4574
6	⑥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 행사	2023. 2. 24.	·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식 행사 · 사업 경과보고, 순환버스 개통 퍼포먼스, 버스 탑승 시연 등	1,631,505	–	1,631,505	교통 정책과	041–635–4572

연번	유형구분	행사 ·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7	⑤	환황해 포럼	2023. 9. 24. ~ 9. 25.	· 개회식, 충남도–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업무협약(MOU) · 세션별 토론(해양벨트, 문화관광, 탄소중립)	294,000	–	294,000	균형발전정책과	041–635–4712
8	⑥	충남 농촌진흥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2023. 12. 20.	· 농업기술원 및 시군기술센터 '23 주요성과 및 '24 중점 방향 보고 · 농업연구개발 우수과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요성과 발표 · 2023년 성과물 전시 및 농촌진흥사업 우수 유공기관 및 개인 시상	9,000	–	9,00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041–635–6044
9	⑥	충남 생활원예 경진대회	2023. 11. 17. ~ 11. 19.	· 아이디어정원 · 접시정원 작품 경진 및 시상	30,836	–	30,83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041–635–6192
10	⑥	충남농촌 체험학습 페스티벌	2023. 11. 18. ~ 11. 19.	· 꿈과 쉼이 있는 농촌 체험으로 농생명 산업 진로체험관, 농촌체험학습 치유농업관 운영	30,000	–	30,00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041–635–6186
11	④	고향마실 한마당	2023. 11. 17. ~ 11. 18.	· 농촌체험휴양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207,901	–	207,901	농촌활력과	041–635–4072
12	⑥	딸기 농업인의 날	2023. 6. 30.	· 충남 딸기산업 재배기술 세미나 개최 · 청년농업인 사례,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병해충 방제, 딸기산업 동향 및 전망	5,000	–	5,000	딸기연구소	041–635–6344
13	⑥	유관순상 운영	2023. 1. 1. ~ 12. 31.	· 유관순상 시상제도 운영 (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시상식 개최 등)	32,625	–	32,625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14	⑥	충청남도 드론 항공영상 공모전	2023. 1. 1. ~ 12. 31.	· 일반국민 및 공무원 대상 드론영상 및 사진공모전 추진	26,300	–	26,300	토지관리과	041–635–2866

연번	유형구분	행사 ·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5	⑥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2023. 10. 31. ~ 11. 1.	· 위치 : 독일 프랑크푸르트 · 규모 : 국내외 기업 100여개사 · 내용 :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847,702	–	847,702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51
16	⑤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2023. 11. 10. ~ 11. 17.	· (공연시설 등) 공연 진행을 위한 스탭, 장비, 무대, 음향, 조명 등 전반 · (공연 프로그램) 행사 진행에 필요한 패널, 게스트, 진행요원 등 섭외 · 홍보물, 플래카드, 배너, 명패, 명찰 등 제작, 통 · 번역 제공, 초청공연단 항공권, 차량임차, 오만찬 제공 등	248,282	–	248,282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5
17	⑥	2023 대백제전 관련 일본 교류 지역 기념행사	2023. 9. 22. ~ 10. 31.	· 2023 대백제전 추진을 위한 일본 교류지역 방문단 초청 및 교류 기념행사 추진	26,153	–	26,153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4
18	⑤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2023. 11. 9.	· 행사명 : 제2회 나도 충남도민입니다 · (때 · 곳) 2023. 11. 9.(목) / 선문대학교(아산) · (참가규모) 약 500명(도내 유학생 및 대학 관계자 등) · 유학생 공공외교회의, 유학생 취업 토크콘서트,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폐회식, 기타 체험부스 운영 등	47,000	–	47,000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5
19	⑤	제6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2023. 7. 13. ~ 7. 14.	· 장소 : 부여 롯데 리조트 · 초청대상 : 중국 13개 교류지역 + a (30명 내외) · 회의주제 : 대학 고등교육 협력, 대백제전 프로모션 · 주요내용 : 개회식, 주제발표, 분과회의, 연사특강, 도내 시찰	73,673	–	73,673	투자통상정책관	041–635–2075
20	⑥	충남관상국화 연합전시회	2023. 10. 27. ~ 11. 5.	· 장소 :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국화전시장(당진 합덕)	7,290	–	7,290	화훼연구소	041–635–6405

5. 관련 주제 언론보도

[ㅁㅁ도] '행사·축제 예산 235억원 공개....예산 낭비 논란'불씨'

[스포츠동아] _ 2025. 3. 19.

▷ㅁㅁ도 행사 · 축제 예산, 과연 효율적인가?

지난 2024년 9월 20일, 경기도 회계과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따라 2023회계연도 행사 · 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 이에 따르면, ㅁㅁ도 내에서 진행된 행사 · 축제 사업 78건의 총원가는 235억 원으로 집계. 반면, 사업수익은 6억 원에 불과해 순원가는 229억 원. 이는 대다수 행사가 적자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

▷예산 집행 기준 강화에도 불구, 지속되는 논란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행사를 중복 개최하거나, 명확한 성과 분석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 이에 따라 예산 낭비와 행사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행정안전부, 일부 행사 원가 공개 대상 제외 논란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상 교육, 공무원 행사, 기념행사, 대규모 국제행사를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사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행사 예산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

▷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

전문가들은 "행사 ·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행사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결국, 행사 · 축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축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

▶ 본 정보지에 게재된 글과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와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본 정보지에 수록된 재정제도, 정책이슈, 세입징수 실적 등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 또한, 정책동향은 정책 연구기관의 최신 자료를 수집 · 가공한 자료입니다. 정보지를 인용하시기 전에 원 출처를 확인하신 후 원문을 바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